○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개별슝낙방식,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 개정 대비표

1. 주요 개정내용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약관, 약정서명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개별승낙방식,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구 하나은행)	협력기업 상호지원 업무협약서(구매기업용) (전자방식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용, 개별슝낙방식, 판매기업에 대해 상환청구권 있는 경우)	(구)하나은행과 (구)한국외환은행의 전산통합에 따라 통합은행에서 사용하는 약정서명에 (구 하나은행) 명칭 삭제
약관, 약정서 内 타 약관, 약정서명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구 하나은행)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 결제제도 기본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산통합으로 인한 타 약관명 변경내용 반영
세부 내용변경	제 3조 (업무의 방법), 제 4조 (기본 협약사항), 제 5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전자매담대 제9조 (관할법원의 합의) 이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려 은행의 본점·지역본부 또는 거래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3 조 (업무의 방법), 제 4 조 (기본 협약사항), 제 5 조 (협력기업에 대한 채권발행한도, 총 대출한도 및 지급의무) 전자외담대 제9조 (관할법원의 합의) 본 협약에 관하여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용어변경 : 매담대 → 외담대 관할법원 기준 변경

2. 개정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 거래고객에 대한 적용

: 개정된 내용은 개정일 이후 신규, 연장, 갱신 등 약정분부터 적용